

제1장 석사과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과 사범대학 대학원과정 이수규정에 의거하여 체육교육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요건과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영역) ① 체육교육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스포츠과학 전공, 인간운동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으로 구성된다.

② 스포츠과학 전공은 스포츠교육, 스포츠문화산업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③ 인간운동과학 전공은 건강운동과학과 신체운동과학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④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은 일반과정과 국제스포츠행정과정(드림투게더마스터)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제3조(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이고 재학연한은 4년(8개 학기)이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인 학생 및 재외국인 모국수학생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학점취득)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점취득 요건은 기초역량학점(3학점), 전공역량학점(15학점), 연구역량학점(12학점)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역량학점) 본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기초역량과목으로 대학원공통역량교과목 중 3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가. 대학원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 (전공역량학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주전공학점 9학점을 포함한 전공학점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전공학점이란 해당 학생의 세부전공과 관련된 체육교육과 교과목 학점을 의미하며, 전공역량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인정한다. 또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하에 석·박사과정 통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 교과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 2항>

3. (연구역량학점) 본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논문연구학점 6학점, 체육연구설계법 3학점을 포함한 12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역량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인정한다.

가. 대학원논문연구 학점의 경우, 전일제 학생은 3, 4학기에 각 3학점씩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은 4, 5학기에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학점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하도록 하며, 지도교수의 대학원논문연구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학점) 체육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본 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과목(실기 포함)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학기당 1과목의 선수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학점은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선수과목 학점이 'F'일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 시 대체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취득가능학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은 전일제 학생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비전일제학생의 경우 학기당 9학점이다. 단, 비전일제 학생의 선수과목취득 및 교직이수에 한하여 3학점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

1. '전일제학생'은 학과(조교실, 진흥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센터 등)에서 학과를 위해 봉

사하거나,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에서 매일 연구하면서 수강하는 학생을 지칭하며, '비전일제 학생'은 교외에 취업하여 논문연구 및 수강을 목적으로 주당 2일 이상 출석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한 학기 혹은 학기 중 일부라도 직업을 가져 비전일제로서 재학한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비전일제와 동일시하며,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한 학기만을 비전일제로 다닌 경우에 전일제와 동일한 졸업학기 수가 인정 가능하다.

3.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 후 추가적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5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 2015. 9. 24.>

② 제 1항의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경과한 후에라도 소속대학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제 2항의 변경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석사학위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비전일제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직전 학기 기준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한다.

나. 직전 학기 기준, 본 과 대학원 전공교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체육연구설계법, 선수과목, 교직이수 관련 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스포츠행정과정(드림투게더마스터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하며 별도로 6월 중 실시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교무처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단,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와 한국문화 1, 2'를 수강하고 그 성적이 'C-' 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은 체육교육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 직전 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 가운데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총 3과목(전공 1, 기초 2)을 선정하여 응시한다. 다만, 필수과목인 체육연구설계법은 응시과목에서 제외한다.

라. 국제스포츠행정과정(드림투게더마스터과정)의 종합시험(전공)은 논문지도교수 및 담당 과목 교수가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 및 실시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도 포함 가능하다.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과 대학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구성 시기는 논문계획서 제출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8조(논문계획서 제출)

- ① 논문계획서 발표자격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 ② 논문계획서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장이 공시한 일시까지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 및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공개 발표된 논문계획서를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확정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 및 제출)

- ① 석사학위논문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교과학점 30학점 이상 취득(논문제출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하였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본교 대학원이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최종심사 이전에 논문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가. 논문 제출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 3개월 이전에 논문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나. 논문결과 발표의 대상과 방식은 논문계획서 발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③ 석사학위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2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학위논문의 게재)

- ① 석사학위 취득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본 내규는 2022년 1학기 및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된다.